

[사 건 명] 행심 2018 - 70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결정』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10. 16., 2018. 10.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은 ◎◎학교 학생으로 2018. 10. 11. 경 2학기 중간고사 영어 과목시험을 실시하면서 선택형 문항에 대한 OMR 카드에 답을 체크하지 않고 누락한 상태에서 OMR 카드를 제출하였고, 시험종료 이후에 청구인은 시험답안지를 거두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OMR 카드상의 선택형 문항에 답이 체크되지 않은 것을 알아차리고, 이를 본 감독교사는 청구인을 교탁 앞으로 나오게 하여 선택형 문항에 대하여 OMR카드에 답을 체크하도록 지시하여 청구인은 OMR 카드에 답을 체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8. 10. 15.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이 시험종료 이후에 체크한 영어시험 선택형 문항에 대하여 점수를 부여하기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10. 16. 경 다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이 시험종료 이후에 체크한 영어시험 선택형

문항에 대하여 점수를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18. 10. 16.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피청구인은 2018. 10. 19.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결과 청구인의 이의를 배척하여 청구인이 시험종료 이후에 체크한 영어시험 선택형 문항에 대하여 점수를 부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2018. 10. 16.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 통지와 2018. 10. 19.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들'이라고 한다)에 이의가 있어 2018. 11. 6. 경 이 사건 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의 경우에 청구인이 실수로 답안을 체크하지 않아 시험종료후 이후 답안을 작성한 것으로서 시험시간을 초과하여 의도적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부정행위와 다르므로 청구인을 부정행위를 한 자와 같게 취급한 것은 형평성에 반하고, 2018. 10. 15.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구제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청구인이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의 자녀이고 □□□□ 등의 여론문제로 이 사건 처분들을 함으로써 청구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는 등 청구인의 불이익 등이 막대하여 이 사건 처분들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

나. 피청구인의 학업성적관리 규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감독교사는 모든 답안지에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감독교사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답안 체크 누락에는 감독교사의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

분들은 부당하다.

다. 2018. 10 . 15.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참석하였던 교감이 2018. 10. 16.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였던 만큼, 2018. 10. 16.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은 절차상의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답안지를 학교에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영어과목 선택형 문제에 체크가 된 최초의 OMR 답안지를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새 OMR 답안지에 선택형 문제에 대하여는 체크를 하지 않고 서술형 답만 다시 재작성하도록 한 것은 피청구인의 학업성적관리규정의 위반한 것이고, 2018. 10. 19.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청구인의 최초의 OMR 답안지를 파기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점수구제 결정을 논의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 2018. 10 . 19.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은 부당하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행위는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학업성적관리규정에서 규정한 부정행위는 아니지만, 이 규정에 준하여 종료령이 울린 이후에 작성된 답안에 대하여 점수를 인정하기 어렵고, 2018. 10 . 15.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은 하자 있는 결정이어서 위 하자있는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바로 잡았으며, 2018. 10. 16.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모친이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의 자녀라는 사실이 언급되지 않은 만큼, 이 사건 처분들은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청구인의 학업성적관리규정상의 감독교사가 답안지에 기재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규정의 의미를 감독교사가 학생이 답안지 체크를 다했는지 확인하여 답안지 체크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답안지 체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해석할 수 없고, 청구인이 답안지에 체크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책임이다

다. 2018. 10. 16.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교감이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회의 성원에 문제가 없다.

라. 2018. 10. 19. 학업성적관리위원회도 이미 이틀전에 회의개최를 결정하였으며, 결정자료의 내용을 위원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차나 과정상에 공정성의 문제가 없다.

IV. 이 사건 처분들의 위법, 부당 여부

1. 근거 법률

가. 초, 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21조 제2항

나. 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 제15조

다. 2018학년도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4조, 제5조, 제6조, 19조, 20조,

2. 인정되는 기초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증거자료,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은 2018. 10. 11. 경 2학기 중간고사 영어 과목시험을 실시하면서 OMR 카드에 서술형 문제에 대한 답안을 작성하였고, 선택형 문제에 대하여는 시험문제지에 답안을 체크하였으나, 실수로 선택형 문항에 대한 OMR 카드에 답을 체크하지 않고 누락을 한 채 답안지를 제출하였다.

나. 이후 감독교사인 △△△가 시험종료 이후에 시험답안지를 거두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OMR 카드상의 선택형 문항에 답을 체크하지 않은 것을 알아차리고, △△△교사는 청구인을 교탁으로 나오게 하여 선택형 문항에 대하여 OMR카드에 답을 체크하도록 지시하여 청구인은 OMR 카드에 답을 체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8. 10. 15.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이 시험종료 이후에 체크한 영어시험 선택형 문항에 대하여 점수를 부여하기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8. 10. 16. 경 다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이 시험종료 이후에 체크한 영어시험 선택형 문항에 대하여 점수를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18. 10. 16.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피청구인은 2018. 10. 19.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결과 청구인의 이의를 배척하여 청구인이 시험종료 이후에 체크한 영어시험 선택형 문항에 대하여 점수를 부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3. 이 사건 처분들의 위법 부당 여부

가. 청구인은 이 사건의 경우에 청구인이 실수로 답안을 체크하지 않아 시험종료후 이후 답안을 작성한 것으로서 시험시간을 초과하여 의도적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부정행위와 다르므로 청구인을 부정행위를 한 자와 같게 취급한 것은 형평성에 반하고, 2018. 10. 15. 학업성적관리위원

회에서 청구인을 구제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청구인이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의 자녀이고 □□□□ 등의 여론문제로 이 사건 처분들을 함으로써 청구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는 등 청구인의 불이익 등이 막대하여 이 사건 처분들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에 이 사건 답안지를 체크를 하지 않은 것이 고의가 아닌 실수라 하더라도 이 사건 영어 시험의 종료후에 답안체크를 하는 것 자체가 같은 영어 과목에 응시한 같은 반 친구들과의 시간배분의 공평성과 점수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 사건 시험의 종료후 이후에는 청구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급박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고,

2018. 10. 15.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구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 다음날인 2018. 10. 16.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그 결정에 대하여 재논의하여 구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던 만큼, 청구인이 2018. 10. 15.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한 신뢰나 그로 인하여 받게 되는 불이익이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과의 비교하여 볼 때 더 크다고 볼 수 없기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피청구인의 학업성적관리 규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감독교사는 모든 답안지에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감독교사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답안 체크 누락에는 감독교사의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학업성적관리 규정 제19조 제1항의 의미는 청구인이 답안체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감독교사가 답안체크를 하도록 허용하는 의미는 아니고, 청구인의 답안 체크 누락에 감독교사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

는 만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2018. 10. 15.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참석하였던 교감이 2018. 10. 16.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였던 만큼, 2018. 10. 16.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은 절차상의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나,

2018. 10. 16.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개최 및 심의의 성원에는 문제가 없었고, 2018. 10. 15.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참석한 교감이 의도적으로 2018. 10. 16.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배제된 것이 아닌 만큼, 2018. 10. 16.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구성인원 절차상에 문제가 없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답안지를 학교에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영어과목 선택형 문제에 체크가 된 최초의 OMR 답안지를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새 OMR 답안지에 선택형 문제에 대하여는 체크를 하지 않고 서술형 답만 다시 재작성하도록 한 것은 피청구인의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2018. 10. 19.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청구인의 최초의 OMR 답안지를 파기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점수구제 결정을 논의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 2018. 10. 19.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청구인의 최초의 영어시험 OMR 답안지의 선택형 문제에 대하여는 답안 체크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만큼, 이후 피청구인이 최초의 OMR 답안지를 폐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2018. 10. 19.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심의를 함에 있어서 최초의 OMR 답안지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될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만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V. 결 론

청구인의 주장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유가 없는 만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